

분류기호 문서번호	학운2019-19호	<b>협 조 문</b>		
시행일자	2019년 5월 27일			
수 신	전체교원	발 신	학사운영처장	<b>이 영 숙</b>
제 목	2019학년도 2학기 「조기취업자학사관리특례규정」에 따른 신청 처리 절차 안내			

1. 평소 학사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2. 2016학년도 2학기 도입된 「조기취업자학사관리특례규정」의 체계적·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일정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과교수님께서서는 신청 처리 절차를 숙지하시어 조기취업대상 학생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1. 신청 자격(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자)

1. 산업체에 취업이 확정된 자로서 마지막 학기 등록을 마친 자
2. 마지막(졸업) 학기를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이수조건을 충족 가능한 자
3. 조기취업자의 소속 학과 전공과 해당 산업체의 전공 분야가 일치
4. 사회복지사업법, 유아교육법, 각종 국가고시 면허(자격)증 취득에 관련되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의 경우는 제외한다.



### 2. 신청 절차(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자)

#### 1. 신청 시기(마지막(졸업) 학기)

가. 학기 개시 전에 취업이 확정 되었을 경우 : 학기 개시 후 7일 이내

※ 등록금 납부 및 수강 신청 후 신청

나. 학기 중에 취업이 확정 되었을 경우 : 취업확정 후 7일 이내

#### 2. 제출 서류

- 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서

- 산업체 재직 확인서(재직증명서 또는 4대 보험 가입사실 증명서(고용보험, 산재보험, 건강보험, 국민연금 중 택일))

- 조기취업자 서약서

#### 3. 제출 절차

가. 수강 신청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[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서] 확인

나. [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서], [산업체 재직 확인서], [조기취업자 서약서] 학과에 제출

#### 4. 기타 사항

가. 원격수업(사이버강좌 등)은 조기취업 학점인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

나. 야간강좌가 개설되어 있는 학과의 경우 교차수업을 통하여 야간강좌에 출석하여야 함을 원칙



### 3. 학점인정평가위원회 개최(학과)

1. 신청서(제출 서류) 및 신청한 학생의 전공과 조기취업된 산업체와의 전공일치 심의
2. 학과 학점인정평가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학생 명단, 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



#### 4. 학점인정평가위원회 회의 결과 접수 및 통보(산학협력단 -> 학과)

##### 1. 산학협력단

- 학과 학점인정평가위원회로 부터 접수된 조기취업자 학점인정 신청 심의 결과를 검토 후 해당 학과 장에게 통보

##### 2. 학과

-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조기취업자 학점인정 신청 검토 결과를 해당 학생 및 담당교수에게 통보



#### 5. 4대 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제출(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자)

1. 제출 시기 : 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 학기 기말고사 실시 1주일 전까지
2. 제출 서류 : 4대 보험 가입사실 증명서(고용보험, 산재보험, 건강보험, 국민연금 중 택일)
3. 제출 처 : 소속 학과



#### 6. 과제물 제출 및 성적평가 응시(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자)

- 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자는 수강신청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확인 후 학기말시험(직무수행능력평가) 등 성적평가 1회는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, 전공 관련 과제물 또한 반드시 제출
- ※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학점을 인정하되 교내 출석일수가 수업일수 1/2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A까지, 1/2미만일 경우에는 최대 B\*까지 인정



#### 7. 최종 성적 확정(학과, 산학협력단, 학사운영처)

##### 1. 학과

- 가. 학과장은 학기말 종합평가 시작 전까지 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자의 재직사실을 확인(산업체 재직 확인서 수령)
- 나. 학과 학점인정평가위원회 회의 개최
  - 1) 수령한 최종 산업체 재직 확인서, 과제물 및 성적 평가 결과 등 당해 학기 학업성적 관련 제반서류 심의
  - 2) 회의 결과에 따른 조기취업 학점인정 대상자 확인서와 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

##### 2. 산학협력단

- 학과 학점인정평가위원회로 부터 접수된 서류 검토 후 그 결과를 학사운영처에 통보

##### 3. 학사운영처

- 산학협력단으로 부터 통보 받은 결과에 대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성적을 인정한다.

3. 문의 : 학사운영처 손금로(내선 1014)

붙임 : 조기취업자학사관리특례규정 1부. 끝.